
201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2015. 1.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 목 차 >

1. 보완기준 수립 개요 1

- 추진경위
- 주요 보완(개선)내용
- 기존의 성격 및 적용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2

- 2015년도 총인건비의 편성(지방공사·공단)
- 성과급 지급대상 제외기간 개선(법정 의무교육 예외)
- 201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오류사항 등 수정

3. 행정 사항 10

< 참고자료 >

1.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 11
2. 산업별 평균임금 현황 / 12

□ 추진 경위

- 2015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시달 : 2014. 6. 25.

□ 주요 보완(개선)내용

- 2015년도 지방공사·공단의 총인건비 편성기준 마련
- 기 시달된 예산편성기준 중 오류사항 수정 등 필요사항 보완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본 기준은 기 시달(14.6.25)된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일부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 예산운영의 건전성·효율성·생산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경영실적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직영기업 및 산하 공사·공단에 대해 본 보완기준 범위 내에서 세부지침을 수립 및 시달
- 지방공사·공단은 인건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본 기준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

□ 2015년도 총인건비의 편성(지방공사·공단)

-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4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 $\{(정원수-현원수)/정원수\}$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할 수 있다.
-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한다. 다만, 2013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25.4백만원(지방공기업 평균의 70%) 이하인 기관은 5.3% 이내, *****, 43.7백만원(지방공기업 평균의 120%) 이상이며 해당 산업 평균¹⁾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2.8% 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 승진, 승급, 채용(정원 범위내) 등에 따른 추가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한다.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 *****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한편, 2015년 1분기까지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 과제를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4년도 총인건비

1)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4.4월 발표)를 바탕으로 300인 이상정규직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를 연평균으로 환산 활용

예산 이내에서 편성한다.

- 정원과 현원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할 수 없다.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2014년도 보완기준	2015년도 보완기준
<p>□ 총인건비의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총인건비예산은 2013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을 (정원수-현원수)/정원수) 5%를 초과할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할 수 있다. ○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3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u>다만, 2013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35.0백만원 이하 30.8백만원 이상인 기관은 2.2%이내, 30.8백만원 미만 24.5백만원 이상인 기관은 2.7%이내, 24.5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3.2%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할 수 있다.</u> - <u>지방공사공단 임원(사장이사장 포함)의 인건비는 2013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u> - 승진, 승급, 채용(정원 범위내) 등에 따른 추가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p>□ 총인건비의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도 총인건비예산은 2014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8%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u>다만, 2013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25.4백만원 이하인 기관은 5.3% 이내, 29.1백만원 이하인 기관은 4.8% 이내, 43.7백만원 이상이며 해당 산업 평균²⁾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2.8% 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u> - <u>< 삭 제 ></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p>예산 범위내에서 운영</p> <p>-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구한 금액을 말한다.</p> <p>○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3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p> <p>※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p> <p><u>< 신 설 ></u></p> <p>○ 정원과 현원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p> <p>○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p>	<p>○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p> <p>※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p> <p>○ 한편, 2015년 1분기까지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 과제를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 이내에서 편성한다.</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	---

2)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4.4월 발표)를 바탕으로 300인 이상정규직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를 연평균으로 환산 활용

□ 성과급 지급대상 제외기간 개선(법정 의무교육 예외)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기업 직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하고, 교육파견의 경우에도 2개월 이상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 법정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인 경우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무교육 기피 현상 발생
 - * (성과급 제외사항)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 징계 등
 - ** (법정 의무교육 예시) 신규 기관사(2개월 10일), 전기차량 운전면허(3개월)

□ 개선안

- 법정 의무교육인 경우 2개월이 넘더라도 성과급 지급 기간에 포함

< 신·구 조문 대비표 >

2015년도 당초 기준	2015년도 보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에 의하여 제외하다. - 다만, 평가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기간(교육파견의 경우 2개월)에 대하여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에 의하여 제외하다. - 다만, 평가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기간(교육파견의 경우 2개월)과 <u>법정의무교육 기간</u>에 대하여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 201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오류사항 등 수정

- 2015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중 일부 오류사항에 대해 정정
 - 예산운영기준(공통기준), 과목해소 중 일부 문구 수정 및 오타 정정 등
- 지방직영기업의 일부 예산과목을 지자체 기준과 통일
 -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으로 자치단체 예산기준과의 상이로 인해 예산 집행상 혼란 야기, 일부 지자체 관련 예산과목을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과 통일

< 신 · 구 조문 대비표 >

2015년도 당초 기준					2015년도 보완 기준				
<p80> 〈 예산의 이용·전용·조정·이체 구분 〉					<p80> 〈 예산의 이용·전용·조정·이체 구분 〉				
구분	이용	전용	조정	이체	구분	이용	전용	조정	이체
적용범위	“항”간	“세항”간	“세목”간	부서간	적용범위	“항”간	“세항”간	“세목”간	부서간
요구권자	지방공기업의 장	부서의 장	사업담당	부서의 장	요구권자	지방공기업의 장	부서의 장	사업담당	부서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이사회)	관리자 (사장이사장)	관리자 (부서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이사회)	승인권자	지방의회 (이사회)	관리자 (사장이사장)	관리자 (부서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사장이사장)
<p93>					<p93>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비용이 되므로(퇴직급여충당부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 예산편성 대상연도의 퇴직연금 납입 예정액을 사업예산의 ‘ <u>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u> ’으로 반영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비용이 되므로(퇴직급여충당부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 예산편성 대상연도의 퇴직연금 납입 예정액을 사업예산의 ‘ <u>퇴직연금 부담금</u> ’으로 반영				
<p126, 130>					<p126, 130>				
구분	목	과목해소	비고		구분	목	과목해소	비고	
사업예산					사업예산				
801	예비비	[사업예산] 1. 사업예산 중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 확보 [자본예산] 1. 자본예산 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 확보	공통		801	예비비	[사업예산] 1. 사업예산 중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 확보 <삭제>	공통	
자본예산					자본예산				
801	예비비	[사업예산] 1. 사업예산 중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 확보 [자본예산] 1. 자본예산 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 확보	공통		801	예비비	<삭제> [자본예산] 1. 자본예산 중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 확보	공통	

<p131>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101	인건비		공통
	01 보수	<지방직영기업> 1. 기본급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 3)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13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 2. 수당 가. 201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3. 정액급식비 가. 201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4. 명절휴가비 나. 201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5. 연가보상비 가. 201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공통
	02 기타직 보수	<지방직영기업>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 같음)	공통

<p131>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101	인건비		공통
	01 보수	<지방직영기업> 1. 기본급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 3)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14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 2. 수당 가. 2014년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3. 정액급식비 가. 2014년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4. 명절휴가비 나. 2014년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5. 연가보상비 가. 2014년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공통
	02 기타직 보수	<지방직영기업>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 같음)	공통

<p135>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 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바 (현행과 동일) 사.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수도법 제39조) 등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공통

<p135>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 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바 (현행과 동일) 사.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수도법 제56조) 등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공통

<p137>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03	업무추진비	<지방공사공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서 정한 손금 인정한도 내에서 공사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 2. (현행과 같음)	공통
	07 사업업무 추진비	<지방공사공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서 정한 손금 인정한도 내에서 공사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 2-3. (현행과 같음)	공사 공단

<p137>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03	업무추진비	<지방공사공단> 1. 법인세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 접대비 손금 인정한도 내에서 공사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 * 지방공단 : 법인세법 제52조 적용시 지지체 납부액을 매출액으로 간주 2. (현행과 같음)	공통
	07 사업업무 추진비	<지방공사공단> 1. 법인세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 접대비 손금 인정한도 내에서 공사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 * 지방공단 : 법인세법 제52조 적용시 지지체 납부액을 매출액으로 간주 2-3. (현행과 같음)	공사 공단

<p139>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12	복리후생비		
	09 기타 복리후생비	<지방직영기업> 2. 급량비 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1)~4) (현행과 같음) 5)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u><신 설></u> 나. (현행과 같음) 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 포함) 가. <u>2014년도 당해 지방자치단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과 재정여건 및 '13년 보수(물가)인상을 등을 고려하여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 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u> 나. <신 설>	공통

<p139>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12	복리후생비		
	09 기타 복리후생비	<지방직영기업> 2. 급량비 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1)~4) (현행과 같음) 5)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나. (현행과 같음) 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 포함) 가. <u>지역적 특성과 재정여건 및 보수(물가)인상을 등을 고려하여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 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u> 나. <u>편성방법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의 별표5 참조</u>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공통

<p143>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301	일반보상금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현행과 같음)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02 민간인재해보상금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u>식비, 동원장비 유류대</u> 3. (현행과 같음)	

<p143>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301	일반보상금		
	09 사회복지요원보상금	(현행과 같음)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u>재해보상비, 장비비 등</u>)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u>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등</u> 3. (현행과 같음)	

<p144>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지방직영기업> 1. 민간이 행하는 <u>사무 또는 사업</u> 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u>민간경상보조를</u>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현행과 같음)	

<p144>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방직영기업> 1. 민간이 행하는 <u>사업</u> 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u>민간경상사업보조를</u>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현행과 같음)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03 <u>사회단체 보조금</u>	<p><지방직영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으로 정한 경비(단, 국고 또는 사도비 보조금에 의한 경우의 보조금은 한도액에서 제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 대상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로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지원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자본적 경비는 제외 	직영
	04 <u>민간행사 보조</u>	<p><지방직영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금지 	
	05 <u>민간 위탁금</u>	<p><지방직영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는 민간 보조사업 예산편성 금지 	

<p148>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402 <u>민간자본 이전</u>		
	01 <u>민간자본 보조</u>	<p><지방직영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현행과 같음)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02 <u>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u>	<p><지방직영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직영
	04 <u>민간행사 사업보조</u>	<p><지방직영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05 <u>민간 위탁금</u>	<p><지방직영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p148>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402 <u>민간자본 이전</u>		
	01 <u>민간자본 사업보조</u>	<p><지방직영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현행과 같음) 	

- (시·도) 관할 시·군·구에 대하여 예산편성보완기준 이첩 통보 : 즉시
- (설립 자치단체) 각 자치단체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해 예산 편성보완지침 수립 통보 : 1월중
- (지방공기업) 각 공기업별 201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 : 1월중

①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일반 사망 등 이유를 불문하고 직인가족 특별채용 원칙적 금지

②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퇴직금 외에 특별공로금 별도 지급 금지

③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에게 현금성 물품(순금 등),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 예산으로 지급 금지

④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금 외에 추가 보상금 지급 금지

⑤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 산재 사망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한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외에 추가지급 금지

⑥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 학자금의 경우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 준수
-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 방과후학교비 지급 금지

⑦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 기관예산으로 영유아 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급 금지

⑧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 경조사 휴가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을 준용하여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운영

참고 2 산업별 평균 임금 현황

< 출처 :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부, '14.4월) >

(단위 : 백만원)

산업별(300인 이상)	2013년 평균임금		비고
	임금*	110% 적용	
전체	55.0	60.5	
광업	53.1	58.4	
제조업	62.5	68.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2.4	79.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 100~299인 : 41.2	45.3	
건설업	67.1	73.8	
도매 및 소매업	53.5	58.9	
운수업	51.1	56.2	
숙박 및 음식점업	42.0	38.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0.4	66.4	
금융 및 보험업	74.3	81.7	
부동산업 및 임대업	49.2	54.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5.9	72.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6	22.7	
교육서비스업	60.5	66.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9.7	54.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9.6	65.6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8.3	64.1	

* 300인 이상·정규직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를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